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법률 상향 규정 및 심의기능 신설〉
■ 임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777호)

2025.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용 훈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법률 상향 규정 및 심의기능 신설	3
가. 관계기관 의견	9
나. 관련 현황	10
다. 검토의견	17
1)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법률 상향 규정	17
2)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조정위원회 전환	20
3)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구성	24
4)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사항	29
2. 부칙(시행일)	46
※ 참고자료	
[참고] 법률 및 대통령령에 근거한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위원회 현황 ...	4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임미애의원 등 16인

2. 제 안 일 : 2024. 12. 20.

3. 회 부 일 : 2024. 12.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1994년에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여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자문기구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에서 저율 관세로 수입 가능한 물량 증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있음.

그런데 농산물 수급조절이나 물가 안정을 목적으로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는 경우 저렴한 수입 농산물 국내 반입으로 인하여 국내 농산물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직접 이해관계자인 농산물 생산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와 관련한 절차가 부재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하위 법령에 규정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되, 그 성격을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하고 농산물 생산자

단체의 대표를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 농산물 수입 과정에 농산물 생산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적정하고 합리적인 농산물 수급조절을 도모하려는 것임(제15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법률 상향 규정 및 심의기능 신설

개정안은 현재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 자문기구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¹⁾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농산물의 수급상황 판단 및 수급조절,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제도의 운영·개선 및 대책 마련, 추천 대상 농산물의 수입물량 증량 및 수입농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기구로 전환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안 제8조, 제10조 및 제15조).²⁾

현 행	개 정 안
제8조(가격 예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과종기 또는 수산물의 종자입식 시기 이전에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한가격[이하 “예시가격”(豫示價格)이라 한다]을 예시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① 농산물의 수급 조절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농산물의 수급상황 판단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예시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조절명령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에 의하여 선출된 사람이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2) 안 제8조, 제10조 및 제15조: 규정된 사항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

안 제15조의2: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

현행	개정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농림업관측, 주요 곡물의 국제곡물관측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수산업관측(이하 이 조에서 “수산업관측”이라 한다) 결과, 예상 경영비, 지역별 예상 생산량 및 예상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u><후단 신설></u>	③ ----- ----- ----- ----- ----- <u>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5조의2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u> <u>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격을 예시한 경우에는 예시가격을 지지(支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연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농림업관측·국제곡물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의 지속적 실시 2. 제6조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의 장려 3. 제9조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매 및 처분 4. 제10조에 따른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5. 제13조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비축사업 제10조(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①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자, 산지유통인, 저장업자, 도매업자·소매업자 및 소비자 등(이하 “생산자등”이라 한다)의 대표는 해당 농수산물의 자율적인 수급조절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한 협약(이하 “유통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부패하거나 변질되기 쉬운 농수산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현저한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② ----- ----- ----- ----- -----

현 행	개 정 안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체가 요청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지역의 해당 농수산물인 생산자등에게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도록 하는 유통조정명령(이하 “유통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 ----- ----- ----- ----- ----- ----- <u>.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5조의2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
③ 유통명령에는 유통명령을 하는 이유, 대상 품목, 대상자, 유통조정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체가 유통명령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내용이 포함된 요청서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인·유통전문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자등의 대표나 해당 생산자단체의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하기 위한 기준과 구체적 절차, 유통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생산자등의 조직과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讓許稅率)로 수입하는 농산물 중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농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수량 및 추천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농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사용용도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수입 추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유통명령에는 유통명령을 하는 이유, 대상 품목, 대상자, 유통조절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체가 유통명령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내용이 포함된 요청서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인·유통전문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자등의 대표나 해당 생산자단체의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하기 위한 기준과 구체적 절차, 유통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생산자등의 조직과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讓許稅率)로 수입하는 농산물 중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농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수량 및 추천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농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사용용도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수입 추천신청을 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추천 대상 농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농산물을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추용 농산물로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수입하여 판매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신설> ※ 관련 조문 「관세법」 제71조(할당관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이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수량, 세율,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④ ----- ----- ----- ----- ----- ----- ----- ----- ----- .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5조의2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천 대상 농산물의 수입물량을 증량하거나 수입농산물에 대하여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경우 제15조의2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수입하여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의2(농산물수급조정위원회)

현 행	개 정 안
	① <u>농산물의 수급조절 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1. <u>농산물의 수급상황 판단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u> 2. <u>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제도의 운영·개선 및 대책 마련 등에 관한 사항</u> 3. <u>제8조제3항에 따른 예시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u> 4. <u>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조절 명령에 관한 사항</u> 5. <u>제15조제4항에 따른 비축용 농산물 수입 결정에 관한 사항</u> 6. <u>제15조제5항에 따른 추천 대상 농산물의 수입물량 증량 및 수입농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사항</u> 7. <u>그 밖에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u> ② <u>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u>

현행	개정안
	<u>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사람이 된다.</u> <u>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u> <u>1. 농산물 수급조절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3급의 직(職)에 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u> <u>2. 농산물 수급 및 유통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임직원</u> <u>3. 농산물 품목별 생산자 단체의 대표</u> <u>4. 연구계, 학계 등에서 농산물 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식견을 가진 사람</u> <u>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가.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신속한 조치가 요구되는 수급정책의 특성상 수급조절위원회를 심의기구로 변경할 경우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하여 시의적절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고, 특정 품목 수급정책에 대한 심의 시 각 품목의 전문가가 아닌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므로 대표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어 개정안의 수용이 곤란함.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을 품목별 생산자단체의 대표로 구성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하는 것과 충돌할 수 있어,³⁾ 개정안의 수용이 곤란함.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단기적인 수급 전망과 수급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생산자단체가 포함된 ‘생육관리협의체’, ‘주산지협의체’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생산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음.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③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4. 위원 위촉 후보자에 대하여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행정안전부

개정안의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현행법 시행규칙으로 이미 설치되어 있는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이 거의 동일하고, 정부는 국정과제로 정부위원회 정비를 추진 중에 있음.

따라서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할 실익이 적어 보이고, 효율적이고 유연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는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보임.

나. 관련 현황

1) 관련 개정안 처리 현황

우리 위원회는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이병진위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 일부개정법률안⁴⁾을 지난 2024년 11월 21일에 다른 「농안법」 일부개정법률안 13건과 함께 대안반영폐기하였음.

이를 통해 마련된 대안⁵⁾이 2024년 11월 28일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으나, 2024년 12월 19일에 「대한민국헌법」 제53조⁶⁾에 따른 재의요구

4) 의안번호 2204538, 발의 2024. 10. 4. → 회부 2024. 10. 7. → 소위원회 직접회부 2024. 11. 11.

5) 의안번호 2205973

6) 「대한민국헌법」

제53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서가 제출되어 2025년 1월 8일에 재의결을 진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부결됨.

< 수급조절위원회 관련 「농안법」 개정안 이력 >

의안 번호	대표발의자 /제안자	제안일	위원회 회부일	심사결과		
				위원회	본회의	재의결
2204538	이병진의원	24. 10. 4.	24. 10. 7.	대안반영폐기 24. 11. 21.	대안반영폐기 24. 11. 28.	-
2205973	농해수위 위원장	24. 11. 27.	-	(대안가결) (24. 11. 21.)	원안가결 24. 11. 28.	부결 25. 1. 8.
2206777	임미애의원	24. 12. 20.	24. 12. 23.	-	-	-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 2025. 1. 28.

개정안과 앞서 발의되어 대안반영폐기된 이병진의원안은 수급조절위원회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점에서 유사함.

다만, 양자 간의 주요한 차이점으로서 ①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 존재 여부(이병진의원안에만 존재), ② 심의사항 중 농산물 수급안정 제도 및 수입관련 사항(개정안에만 존재)의 두 가지가 존재함.

< 개정안과 이병진의원안(2204538, 대안반영폐기)의 주요 차이점 >

구분	개정안(임미애의원안)	이병진의원안(2204538)
설치 위원회	-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
위원회 심의사항	1 - 농산물 수급상황 판단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 농수산물 수급상황 판단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2 - 예시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 예시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3 - 유통조절명령에 관한 사항	- 유통조절명령에 관한 사항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구분	개정안(임미애의원안)	이병진의원안(2204538)
위원회 심의사항	4 -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제도의 운영·개선 및 대책 마련 등에 관한 사항 -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비축용 농산물 수입 결정에 관한 사항 - 추천 대상 농산물의 수입물량 증량 및 수입농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사항	
	5 - 그 밖에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 그 밖에 농수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자료: 개정안(2206777) 및 이병진의원안(2204538)을 바탕으로 작성, 2025. 1. 28.

2)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현황

현행법 시행규칙 제8조는 농산물의 수급 조절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이하 “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⁷⁾

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① 농산물의 수급 조절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농산물의 수급상황 판단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예시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조절명령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에 의하여 선출된 사람이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현황 ＞

구분		내용
위원회 구성일		- 2013. 4. 30.
위원 (20명)	위원장	- 당연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 - 위촉직: 서울대학교 김관수 교수
	공무원인 위원 (5명)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 유통소비정책관 -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장 -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 통계청 사회통계국장
	민간위원 (15명)	- 생산자대표 등 15명 * 공공기관 1명, 농협 1명, 생산자단체 6명, 소비자·유통업체 대표 4명, 학계 3명
'24년 회의 개최 실적		- 본회의: 출석 4회(서면 1회)
예산		- 2024년: 52백만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농림축산식품부, 2024. 12. 23.

현재 수급조절위원회는 법률이나 시행령의 위임 없이 시행규칙에만 근거를 두고 있는 위원회로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행정기관위원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점검 대상이 아님.

수급조절위원회는 ① 농산물의 수급상황 판단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② 예시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③ 유통조절명령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가령, 수급조절위원회는 농산물 수입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총 8차례('22년 2차례, '23년 3차례, '24년 3차례)의 회의를 개최한 바 있음.

＜ 최근 3년간 수입 관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개최 현황 ＞

연도	차수	회의일시	방식	상 정 안 건
'24	1차	'24. 3. 28. 14:00~16:00	대면	(심의) 농산물 수급관리 가이드라인('23.10월 개정) 최신화 (보고) 주요 농산물 수급동향 및 대책 추진현황(안)
	2차	'24. 6. 25. 14:00~16:00	대면	(보고) 마늘, 양파 수급 및 가격 안정 방안
	4차	'24. 12. 4. 18:00	서면	(보고) 신선 무 할당관세 적용기한 연장(안)
'23	1차	'23. 5. 11. 10:30~12:00	대면	(보고) 주요 농산물 수급 동향 및 대책 추진현황
	2차	'23. 6. 28. 14:00~16:00	대면	(보고) 여름철 노지채소 수급관리 방안
	3차	'23. 10. 26. 10:30~12:00	대면	(보고) 주요 농산물 수급안정대책 추진현황
'22	1차	'22. 5. 31. 10:30~12:00	대면	(심의) '22년 주요채소 수급관리 방안(안) (보고) 배추·무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추진 대책 (보고) 양파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추진대책
	2차	'22. 10. 26. 11:00~12:00	대면	(보고) '22년 주요 노지채소류 수급관리 계획 추진현황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 2025. 1. 17.

한편, 수급조절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 등이 유사한 위원회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가 있는데, 현재 수급조절위원회와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모두 수급조절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함.

반면, 법령의 근거 없이 시행규칙에만 근거를 두는 수급조절위원회와 달리,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는 「축산법」 제32조의4⁸⁾에 근거를 두

8) 「축산법」

제32조의4(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가축 및 축산물(「낙농진흥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원유 및 유제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한 자문(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이하 “수급조절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수급조절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축산물의 품목별 수급상황 조사·분석 및 판단에 관한 사항

고 있어, 「행정기관위원회법」에 따른 협의 대상 위원회로서 행정안전부의 관리를 받고 있음.

<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와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비교 >

구분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소속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근거	「농안법 시행규칙」 제8조	「축산법」 제32조의4
기능	농산물의 수급 조절 등에 관한 자문	가축 및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한 자문
자문사항	1. 농산물의 수급상황 판단 및 수급 조절에 관한 사항 2. 예시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3. 유통조절명령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축산물의 품목별 수급상황 조사·분석 및 판단에 관한 사항 2. 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제도 및 사업의 운영·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축종별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위원구성	1.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 및 물가업무 담당국장 2. 기획재정부·농촌진흥청·통계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자 각 1인	1.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물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2.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으로 가축·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3. 통계청 소속으로 가축동향조사 관련

2. 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제도 및 사업의 운영·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축종별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 ③ 수급조절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가축 및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④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조절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축종별 소위원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분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급이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장, 농협중앙회 원예담당 상무 4. 농산물 품목별 생산자 단체의 대표 5. 농산물 수급에 관련되는 유통업계·소비자단체 대표 6. 연구계, 학계 등에서 농산물 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식견을 가진 자	-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4. 농협경제지주회사에서 축산물 수급 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간부 5.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장 6. 소비자단체의 대표 7.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에서 가축·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8. 법률·경제·경영 및 축산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7년 이상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9. 축산업 관련 생산자단체·유통업계의 대표 및 축산업 관련 전문가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재구성. 2025. 1. 28.

다. 검토의견

1)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법률 상향 규정

개정안은 현재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규칙에만 규정되어 있는 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조의2(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① 농산물의 수급조절 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농산물의 수급상황 판단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2.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제도의 운영·개선 및 대책 마련 등에 관한 사항 3. 제8조제3항에 따른 예시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4.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조절명령에 관한 사항 5. 제15조제4항에 따른 비축용 농산물 수입 결정에 관한 사항 6. 제15조제5항에 따른 추천 대상 농산물의 수입물량 증량 및 수입농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농산물 수급조절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3급의 직(職)에 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농산물 수급 및 유통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임직원 3. 농산물 품목별 생산자 단체의 대표 4. 연구계, 학계 등에서 농산물 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식견을 가진 사람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은 개정 절차가 법률 또는 시행령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간소함.⁹⁾

수급조절위원회는 시행규칙에만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설치 근거의 안정성에 따른 위원회 존속의 안정성은 법률 또는 시행령에 설치 근거를 둔 경우에 비하여 낮음.

따라서 수급조절위원회가 법률에 근거를 두게 될 경우 위원회 존속의 안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수급조절위원회가 법률에 따른 위원회가 되면서 「행정기관위원회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측면도 있음.

현재 수급조절위원회는 법률 또는 시행령에 따른 위원회가 아니므로, 위원회 설치 시 「행정기관위원회법」 제6조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요하지 않았음.¹⁰⁾ 이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의 관리·점검을 받지 않았음.

9) 개정 시, ① 법률은 국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② 대통령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함

1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행정기관의 장(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중 그 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수행하는 등 운영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대상 위원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협의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후단에서 “협의 대상 위원회의 범위”란 법률 및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공통으로 설치되는 위원회로서 해당 위원회의 설치 근거 법령의 제·개정 시 법령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의 설치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한 위원회는 제외한다.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조절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가 되어 「행정기관위원회법」 제6조에 따른 협의 대상 위원회가 되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설치에 있어 협의를 요하게 됨.

또한, 설치 이후에는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타 위원회와의 중복성 여부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관리·점검을 받게 됨.

이에 따라 수급조절위원회의 법률 상향 규정 여부는 ① 설치 근거의 안정성 측면이 강화되어 위원회 존속의 안정성을 강화하지만, ② 행정안전부의 관리·점검대상이 된다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조정위원회 전환

개정안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수급조절위원회를 심의기능을 갖춘 심의·조정위원회로 전환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참고) 현행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8조(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① 농산물의 수급 조절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농산물의 수급상황 판단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예시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조절 명령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의2(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① 농산물의 수급조절 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농산물의 수급상황 판단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2.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제도의 운영·개선 및 대책 마련 등에 관한 사항 3. 제8조제3항에 따른 예시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4.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조절명령에 관한 사항 5. 제15조제4항에 따른 비축용 농산물 수입 결정에 관한 사항 6. 제15조제5항에 따른 추천 대상 농산물의 수입물량 증량 및 수입농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현재 수급조절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대한 자문기능만을 수행하는 위원회임.

그런데 개정안은 수급조절위원회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동시에 법률에 따른 심의기능을 부여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른 수급조절위원회는 그 분류가 심의·조정위원회에 해당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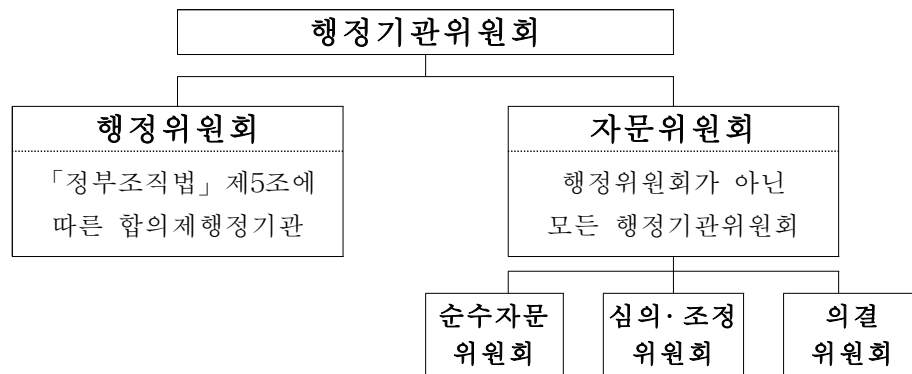
< 행정기관위원회의 분류 >

□ 행정기관위원회의 분류

- 「행정기관위원회법」상 위원회는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로 구분, 자문위원회는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법 제5조)

*** (행정위원회)** ① 고유의 독자적 사무, ② 그 사무에 관한 의사를 직접 결정, ③ 의사결정의 대외적 표명 및 집행 권한 有 (행정기관위원회법 제5조 및 통칙 제21조)
예) 이북5도위원회, 주민등록변경위원회 등 43개 위원회('20.6월말 기준)

- 자문위원회는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의 기능·성격에 따라 순수자문, 심의·조정, 의결위원회로 구분(위원회 명칭은 심의회, 협의회 등 다양한 표현 사용)



□ 자문위원회의 기능별 분류 * 「정부조직관리실무」 등 참고

구분	기능	행정기관 기속 여부
순수자문위원회	자문	불기속
심의·조정위원회	심의	불기속
의결위원회	의결	기속

○ 심의·조정위원회

- 법령에서 위원회 심의를 필요적으로 거치도록 정한 사항을 심의
- 의결의 형태를 취하더라도 행정기관을 기속하지 못하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우도 있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 2025. 1. 17. (일부 재가공)

개정안에 따라 수급조절위원회가 수급안정을 위한 예시가격 결정, 유통조절명령 등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될 경우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위원회 심의를 필요적으로 거쳐야 함.

이 경우 정책 결정 단계의 증가에 따라 정책의 신속성 측면이 약화될 수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수급조절위원회가 현재보다 빈번하게 개최될 필요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연간 회의 개최횟수가 4회에서 24회로 증가하고 속기록 작성비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5년간 총 10억 2,000만원으로 추계하였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 >

(단위: 백만원)

구분	내용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개정안	민간위원 회의참석 사례금	민간위원 수(A, 명)	15	15	15	15	15	—	
		1인당 사례금 (B, 백만원/명)	0.3	0.3	0.3	0.3	0.3	—	
		연간 회의개최횟수(C, 회)	24	24	24	24	24	—	
		소계(D=A×B×C, 백만원)	108	108	108	108	108	540	
	위원회 운영비	속기록 작성비 (E=C×1백만원)	24	24	24	24	24	120	
		회의 운영경비 (F=C×3백만원)	72	72	72	72	72	360	
		사업경비 (백만원)	검증용역(G1)	5	5	5	5	5	25
			적정성평가(G2)	—	—	20	—	—	20
			예비비 등(G3=F×50%)	36	36	36	36	36	180
			소계(G=G1+G2+G3)	41	41	61	41	41	225
	소계(H=D+E+F+G)		245	245	265	245	245	1,245	

구분	내용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현행 (기준)	민간위원 회의참석 사례금	민간위원 수(A, 명)	15	15	15	15	15	—	
		1인당 사례금 (B, 백만원/명)	0.3	0.3	0.3	0.3	0.3	—	
		연간 회의개최횟수(I, 회)	4	4	4	4	4	—	
		소계(J=A×B×I, 백만원)	18	18	18	18	18	90	
	위원회 운영비	회의 운영경비 (K=I×3백만원)		12	12	12	12	12	60
		사업경비 (백만원)	검증용역(L1)	5	5	5	5	5	25
			적정성평가(L2)	—	—	20	—	—	20
			예비비 등(L3=K×50%)	6	6	6	6	6	30
			소계(L=L1+L2+L3)	11	11	31	11	11	75
		소계(M=J+K+L)		41	41	61	41	41	225
추가재정소요(N=H-M)		204	204	204	204	204	1,02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2024. 12. 23.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사이 권한 행사 방식의 차이가 발생하게 됨.

현행법은 농산물 외에 수산물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도 하한가격을 예시할 수 있거나 유통조절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안은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설치하고 있지 않으므로, 두 명의 권한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대해서만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 이에 따라 같은 권한의 행사에 대하여 주체마다 다른 절차를 규정하게 됨.

참고로, 지난 제418회 국회(정기회)에서 대안반영폐기된 이병진의원안(의안번호 2204538)과 이에 따라 마련된 대안(의안번호 2205973)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해양수산부에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각각 두는 형태를 취한 바 있음.

3)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구성

개정안은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구성을 법률로 정하면서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을 농산물 품목별 생산자 단체의 대표로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참고) 현행 위원구성(훈령)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하며,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 및 물가업무 담당국장 2. 기획재정부·농촌진흥청·통계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자 각 1인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급이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장, 농협중앙회 원예담당 상무 ③ 제1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농산물 품목별 생산자 단체의 대표 2. 농산물 수급에 관련되는 유통업계·소비자단체 대표 3. 연구계, 학계 등에서 농산물 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식견을 가진 자 ④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에 의해 선출된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제15조의2(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농산물 수급조절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3급의 직(職)에 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농산물 수급 및 유통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임직원 3. 농산물 품목별 생산자 단체의 대표 4. 연구계, 학계 등에서 농산물 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식견을 가진 사람 ④ (생략)

현행법 시행규칙은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이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훈령인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에서 규정함.

개정안은 수급조절위원회의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대체로 현재 시행규칙 및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구성(공동위원장 2명, 20명 이내 위원, 위원 자격 등)을 반영하고 있음.

또한, 개정안은 현재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을 생산자 단체 대표로 구성’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법률에서 위원 구성에 관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음.

<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위원구성 비교 >

구분	현행(시행규칙 및 훈령)	개정안(법률)
위원	- 당연직 *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 및 물가업무 담당 국장 * 기재부·농진청·통계청 소속 공무원 각 1인 * aT 수급이사, 농경연 농업관측센터장, 농협중앙회 원예담당 상무	- 농산물 수급조절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3급의 직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 농산물 수급 및 유통과 관련된 기관·단체 임직원
	- 위촉직 * 농산물 품목별 생산자단체 대표 * 농산물 수급 관련 유통업계·소비자단체 대표 * 연구계, 학계 등에서 농산물 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식견을 가진 자	- 농산물 품목별 생산자 단체 대표 * 단,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 연구계, 학계 등에서 농산물 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식견을 가진 사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구분	현행(시행규칙 및 훈령)	개정안(법률)
위원장	- 공동위원장 2인 *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 (※ 식량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 소속임) *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호선된 자	- 공동위원장 2인 * 농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호선된 자
위원정수	- 20인 이내	- 20인 이내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바탕으로 재구성, 2025. 1. 29.

현재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위원회 28개와 비교하였을 때, 법률에서 위원 구성에 관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등 6개 위원회뿐임.

이들 위원회는 대부분 위원 구성에 있어 성별이나 각 요건별로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위원회 >

번호	위원회	근거법령	위원구성 관련 제한
1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2조	-
2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90조	-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성별 고려
4	간척지운영위원회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5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8조	-
6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5조의2	-
7	농림종자위원회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18조	-
8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조	-
9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	-

번호	위원회	근거법령	위원구성 관련 제한
10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조	각 호마다 1명 이상
11	도시농업협의회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
12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수의사법 시행령 제3조	-
13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식품산업진흥법 제5조	-
14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
15	중앙가축방역심의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조	-
16	중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
17	축산계열화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16조	-
18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심의회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6조	-
19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4조	제2호 각목마다 5명 이내
20	경마감독위원회	한국마사회법 제44조의2	-
21	중앙농촌공간 정책심의회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
22	개식용종식위원회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23	농협경제사업평가협의회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7	각 호마다 인원수 제한
24	동물복지위원회	동물보호법 제7조	-
25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7조	여성농업인 30% 이상
26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성별 고려, 위촉직 각 목 당 12명 이내
27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축산법 제32조의4	-
28	농지관리위원회	농지법 제37조의3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 2025. 1. 17. (일부 재가공)

개정안은 수급조절위원회 내에서 생산자단체 대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생산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¹¹⁾

개정안과 같이 특정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을 일정 비율 이상 두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위원회로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위원 정수의 30% 이상을 여성 농업인으로 구성)가 있음.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는 정책당사자인 여성농업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

이를 고려하면, 개정안은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생산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논의를 거쳐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임.

참고로,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안 제15조의2제3항에서 ‘위원회’의 임명 또는 위촉권자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오기로 보이므로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권자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도록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11)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p. 295.

4)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사항 신설

- 개정안은 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 ① 현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문사항을 심의사항으로 두는 한편,
 - ② 현재 자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세 가지 사항을 심의사항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제8조, 제10조 및 제15조).

< 개정안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소관 사항 변화 >

구분	현행(시행규칙)	⇒	개정안(법률)
자문/심의 사항	1. 농산물의 수급상황 판단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	1. 농산물의 수급상황 판단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	<u>2.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제도의 운영·개선 및 대책 마련 등에 관한 사항</u>
	2. 예시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	3. 예시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3. 유통조절명령에 관한 사항	=	4. 유통조절명령에 관한 사항
		⇒	<u>5. 비축용 농산물 수입 결정에 관한 사항</u>
		⇒	<u>6. 추천 대상 농산물의 수입물량 증량 및 수입농산물에 대한 할당 관세 적용에 관한 사항</u>
	4. 그 밖에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7. 그 밖에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u>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 및 개정안(2206777)을 바탕으로 재구성. 2025. 1. 28.

(1)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기존 자문사항

개정안은 현재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된 수급조절위원회의 자문 사항인 ① 농산물의 수급상황 판단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② 예시 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③ 유통조절명령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개정안에 따른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10조, 제15조의2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7호).

현 행	개 정 안
제8조(가격 예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농수산물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물의 과중기 또는 수산물물의 종자입식 시기 이전에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한가격 [이하 “예시가격”(豫示價格)이라 한다]을 예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물의 농림업관측, 주요 곡물의 국제곡물관측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수산업관측(이하 이 조에서 “수산업관측”이라 한다) 결과, 예상 경영비, 지역별 예상 생산량 및 예상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 ----- ----- ----- .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5조의2에 따른 <u>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격을 예시한 경우에는 예시가격을 지지(支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연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농림업관측·국제곡물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의 지속적 실시 2. 제6조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의 장려 3. 제9조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구매 및 처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참고) 현행 자문사항 시행규칙 제8조(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농산물의 수급상황 판단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예시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조절명령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의2(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① 농산물의 수급조절 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u>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u>농산물의 수급상황 판단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u> 2. (생략) 3. <u>제8조제3항에 따른 예시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u> 4. <u>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조절명령에 관한 사항</u> 5. (생략) 6. (생략) 7. <u>그 밖에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u> ② ~ ④ (생략)

수급조절위원회의 기존 소관사항과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 사항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안 제15조의2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심의사항은 수급조절위원회의 기존 자문사항을 그대로 소관사항으로 하는 것임.

개정안이 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에 따라 소관사항 역시 함께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둘째, 안 제15조의2제1항제7호는 현행 시행규칙과 달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사람으로 총 2인¹²⁾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안 제15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경우, 민간위원인 위원장이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한 수급조절위원회가 소관할 수 있게 되는 차이점이 나타남.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한 농산물 생산자 의견의 정책 반영에 있음을 고려하면, 민간위원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해 보임.

셋째, 안 제8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은 예시가격 결정과 유통조절명령의 근거 규정에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사항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이는 수급조절위원회를 심의·조정위원회로 전환함에 따라 기존의 자문사항이었던 예시가격 결정과 유통조절명령이 심의사항으로 변화하기 때문임.

이에 개별 정책의 근거 규정에도 이를 심의사항으로 명시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12) 참고로 현재 수급조절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①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 ② 서울대학교 김관수 교수(농경제사회학부)임.

(2)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제도의 운영·개선 및 대책 마련
등에 관한 사항

개정안은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제도의 운영·개선 및 대책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2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조의2(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① 농산물의 수급조절 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 략) 2.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제도의 운영·개선 및 대책 마련 등에 관한 사항 3. (생 략) 4. (생 략) 5. (생 략) 6. (생 략) 7. (생 략) ② ~ ④ (생 략)

개정안에 따라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한 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사항으로 규정하는 경우, 수급안정과 관련한 전반적인 제도¹³⁾를 심의사항으로 포함할 수 있을 것임. 이는 개정안의 취지인 수급조절 위원회를 통한 생산자 의견의 정책 반영에 부합할 것으로 보임.

13) 가령, 「농안법」에 따른 제도로는 농림업관측(제5조), 계약생산(제8조), 비축사업(제13조) 등이 있을 것임

개정안에 따른 수급조절위원회는 심의·조정위원회이므로,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기속하는 것은 아님. 그러나 수급조절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이므로, 그 심의 결과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것임.

따라서 개정안에 따르면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 및 대책에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검토 또는 반영될 것이 기대되므로 입법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어 보임.

(3) TRQ와 할당관세에 관한 사항

개정안은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농산물의 수입과 관련한

① 비축용 농산물의 수입 결정, ② 추천 대상 농산물의 수입물량 증량, ③ 할당관세 적용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제15조제5항, 제15조의2제1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illegible]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관련 조문 「관세법」 제71조(할당관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산물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수량, 세율,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천 대상 농산물의 수입물량을 증량하거나 수입농산물에 대하여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경우 제15조의2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수입하여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의2(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① 농산물의 수급조절 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4. (생 략) 5. 제15조제4항에 따른 비축용 농산물 수입 결정에 관한 사항 6. 제15조제5항에 따른 추천 대상 농산물의 수입물량 증량 및 수입 농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사항 6. (생 략) 7. (생 략) ② ~ ④ (생 략)

개정안은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서 농산물의 수입과 관련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15조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이하 “「마라케쉬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시장접근물량(Tariff Rate Quota; TRQ)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하는 농산물에 대한 추천, 비축용 농산물 수입 등의 제도를 규정함.

한편, 「관세법」 제71조는 원활한 수급, 산업의 경쟁력 강화, 특정 물품의 수입 억제 등을 위하여, 기본세율의 $\pm 40\%p$ 범위 내에서 관세를 조정·운영할 수 있는 할당관세 제도를 규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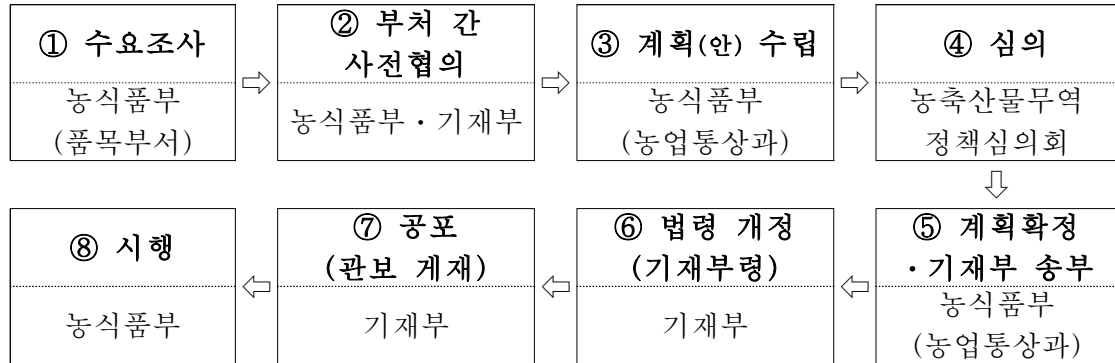
이들 두 가지 제도는 낮은 세율의 관세를 통하여 국내 시장에 유입된 수입농산물이 일종의 공급충격으로 작용함에 따라, 농산물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짐.

그런데 현재 이들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제도에 따른 공급충격의 영향을 받는 생산자(농가)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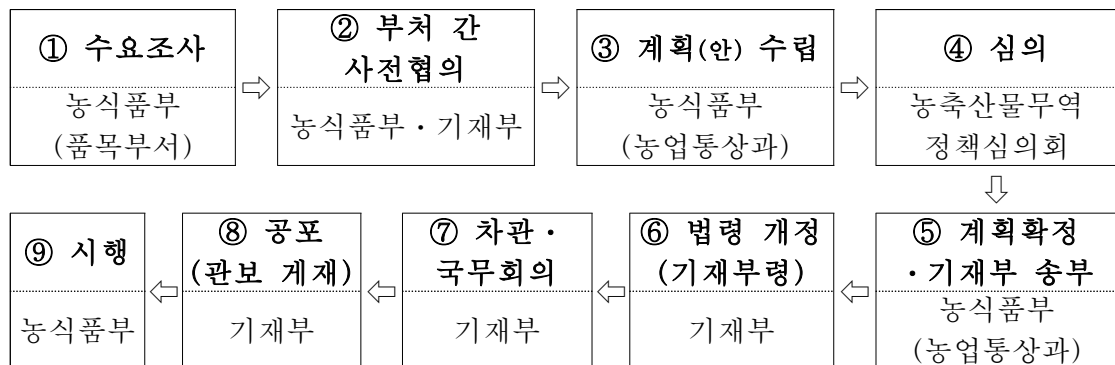
가령, TRQ의 증량과 할당관세의 추진 절차를 살펴보면, 대부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기획재정부의 행정 내부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

< TRQ 증량 및 할당관세 추진 절차 >

1. TRQ 증량



2. 할당관세 추진 절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실, 2024. 12. 13.

해당 과정에서 외부인이 참여할 수 있는 경로로 농축산물무역정책 심의회(이하 “무역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가 존재함.

다만, 무역정책심의회는 위원 구성이 대부분 생산자가 아닌 당연직 위원과 농협 대표이사·학계·소비자단체 등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생산자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지난 2024년 국정감사에서는 TRQ와 할당관세 제도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존재했음. 특히, 일부 위원은 TRQ와 할당관세 제도에 생산자(농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경로로서 수급조절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하였음.

< 2024년 농해수위 국정감사 - TRQ, 할당관세 관련 질의 >

□ 2024년 10월 7일 - 농림축산식품부

- 임미애위원: 할당관세에 따른 효과의 대부분이 소비자가 아닌 수입·유통업자에게 귀착되어, 효과성 문제가 있음
- 이원택위원: TRQ 결정시 생산농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증인(관세청 차장)에게 질의

□ 2024년 10월 24일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종합감사

- 임미애위원: TRQ와 할당관세 제도에 농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경로로 수급조절위원회,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 등 방안 제시
- 어기구위원장: TRQ와 할당관세 제도와 관련하여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생산자 대표의 확실한 참여 필요

자료: 국회 회의록시스템을 바탕으로 재구성, 2025. 2. 9.

이에 개정안은 수급조절위원회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TRQ와 할당관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하여 이들 정책에 생산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이므로,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어 보임.

다만, 개정안에 따른 경우 현재 해당 사항에 대한 별도의 심의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무역정책심의회와의 역할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무역정책심의회는 농림축산식품부훈령인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 규정」(이하 “「무역정책심의회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임.¹⁴⁾

무역정책심의회는 매년 TRQ 증량 및 정기·긴급 할당관세 운영 계획 등을 심의하고 있음. 현재 12명의 위원¹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위촉직 위원은 6명임.

< 무역정책심의회 개요 및 운영현황 >

1. 개요

- WTO 출범에 따라 농축산물 수출입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수급안정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자문기구('95. 3월 제정)
 - (근거)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 규정(농식품부 훈령 제467호)
 - (구성) 정부, 유관기관, 학계, 소비자단체 등 15인 이내
 - * 12명 : 당연직 5명(농식품부, 농진청, aT, KREI) / 간사(국제협력관)
 - 위촉직 6명(농협 2, 전남대, 소비자단체,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한여농)
 - (기능) 농축산물 수출입정책의 주요사항 심의

2. 운영 현황

- 매년 TRQ 증량 및 정기·긴급 할당관세 운영계획 등 심의
 - (개최실적) '20년 2회, '21년 6회, '22년 8회, '23년 9회, '24년 10회
 - * '24년: 할당관세 관련 7회, TRQ 증량 관련 1회, 할당관세 및 TRQ 증량 관련 2회
 - (운영) 위원의 과반수 출석 시 개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시 의결
 - * (훈령 제5조) 심의회 소집 시 회의 일정 및 안건을 개최 3일 전까지 위위들에게 통지,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
 - (기능) 농축산물 수출입정책의 주요사항 심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실, 2024. 12. 13.

14)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 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467호, 2023. 2. 17.)

제1조(목적) 세계무역기구(WTO)출범에 따라 농축산물 수출입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농축산물의 수급안정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기관으로서 "농축산물 무역정책심의회"를 설치한다.

15)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 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467호, 2023. 2. 17.)

제2조(심의회 구성 및 위촉직위원의 임기) ① 농축산물 무역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관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의 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은 농촌진흥청 차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급담당이사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한다.

③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④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TRQ 증량과 할당관세에 대한 사항은 무역정책심의회(훈령에 근거)와 수급조절위원회(법률에 근거) 모두의 심의사항이 됨.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이들 정책에 대한 생산자의 의견 반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두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한 규정을 비교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무역정책심의회 규정」의 경우 무역정책심의회의 위원장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1인을 지정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 간사와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음. 이때 위촉직 위원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음.

반면, 개정안의 경우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공동위원장 2인을 규정하며, 1인을 호선된 민간위원으로 규정함. 또한, 전체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을 품목별 생산자단체 대표로 구성하도록 제한함.

< 무역정책심의회의와 수급조절위원회 위원 구성 비교 >

구분	무역정책심의회의	(개정안) 수급조절위원회
위원	- 당연직 * 농식품부 차관(위원장) * 농촌진흥청 차장 * 농경연(KREI) 부원장 * aT 수급담당이사 - 간사 * 농식품부 국제협력관	- 농산물 수급조절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3급의 직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 농산물 수급 및 유통과 관련된 기관·단체 임직원
	- 위촉직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 현재 위촉직 위원(6인) -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 대표이사 -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이사 - 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 소비자단체 회장 -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회장 -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 농산물 품목별 생산자 단체 대표 * 단,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 연구계, 학계 등에서 농산물 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식견을 가진 사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구분	무역정책심의회	(개정안) 수급조절위원회
위원장	- 위원장 1인 * 농식품부 차관	- 공동위원장 2인 * 농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호선된 자
위원정수	- 15인 이내	- 20인 이내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바탕으로 재구성, 2025. 2. 9.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수급조절위원회가 TRQ, 할당관세 등 수입에 관한 제도에 관하여 생산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경로로 작용하는 데는 유리할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드러나는 취지는 농산물 수입에 관한 사항이 국내 농산물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직접 이해관계자인 농산물 생산자의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보임.

그런데 안 제15조제5항은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수입하여 판매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음.

즉, 추천 대상 농산물의 수입물량 증량 및 수입농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에 대하여 반드시 심의를 거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기속하는 규정이 아님.

따라서 임의규정만으로도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하기 충분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둘째, 개별 조항에서 규정하는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수급조절위원회 설치의 근거 조항에서 규정하는 심의사항 간의 차이가 있어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임.

안 제15조제4항에서 추천 대상 농산물을 비축용 농산물로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수입하여 판매하게 하는 경우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급조절위원회 설치의 근거 조항인 안 제15조의2제1항에서는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제15조제4항에 따른 비축용 농산물 수입 결정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두 규정 사이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 안 제15조제4항과 안 제15조의2제1항 비교 >

구분	안 제15조제4항	안 제15조의2제1항
심의사항	- 추천 대상 농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농산물과 관련한 다음 두 가지 경우 ○ 비축용 농산물로 수입 ○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수입하여 판매하게 하는 경우	- 제15조제4항에 따른 비축용 농산물 수입 결정에 관한 사항

자료: 개정안을 바탕으로 작성, 2025. 2. 9.

따라서 ① 안 제15조제4항에서 비축용 농산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거나, ② 안 제15조의2제1항에서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수입하여 판매하게 하는 것에 관한 사항도 심의사항에 포함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부칙(시행일)

개정안은 법률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부칙)

개 정 안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안 제15조의2제4항에서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6개월의 준비기간을 두는 것은 적절해 보임.

문 의 처

02)6788-5416

참고자료

법률 및 대통령령에 근거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위원회

번호	위원회 성격	위원회	담당부서
1	행정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농축산위생품질팀
2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첨단기자재종자과
3	심의조정자문 (비기속)	농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	농촌정책과
4		간척지운영위원회	농업기반과
5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	식생활소비정책과
6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정책과
7		농림종자위원회	첨단기자재종자과
8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농축산위생품질팀
9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재해보험정책과
10		농업재해보험심의회	재해보험정책과
11		도시농업협의회	과학기술정책과
12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농림축산검역본부 기획조정과
13		식품산업진흥심의회	푸드테크정책과
14		자유무역협정이행에 따른 농업인등지원위원회	농업경영정책과
15		중앙가축방역심의회	방역정책과
16		중앙농업·농촌및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농촌정책과
17		축산계열화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축산경영과
18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심의회	국제협력총괄과
19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운영심의위원회	공익직불정책과
20		경마감독위원회	축산정책과
21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	농촌공간계획과
22		개식용종식위원회	개식용종식추진단

번호	위원회 성격	위원회	담당부서
23	순수자문	농협경제사업평가협의회	농업금융정책과
24		동물복지위원회	동물복지정책과
25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	농촌여성정책팀
26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	총괄기획팀
27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축산유통팀
28		농지관리위원회	농지과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 2025. 1. 17.